

<붙임 3>

위치정보사업 양수 및 분할 인가 심사

관련 사업계획서 추가 제출사항

2012. 9.

방송통신위원회

I. 인가 심사 개요

1단계	임원 결격심사
-----	---------

- 허가신청 법인의 임원이 미성년자·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, 위치정보법, 정보통신망법, 전기통신기본법, 전기통신사업법 또는 전파법을 위반하여 사업폐지 명령 내지 금고이상의 실형 선고 여부 심사 (본적지 관할 구·군청에 신원조회 의뢰)

2단계	인가 심사
-----	-------

- 인가신청 법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해 심사위원단을 구성하여 '위치정보사업의 양수·합병 인가 기준 및 절차 관련 내부지침'에 의한 심사항목 심사

- ① 재정 및 기술적 능력과 사업운용 능력의 적정성
 - ② 위치정보사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
 - ③ 개인위치정보주체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보호 및 공익에 미치는 영향

※재무구조의 건전성 평가 또는 영업 및 기술부문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법인의 의견을 청취

II. 인가 심사 기준 및 추가 기재사항

1	인가 심사 기준
---	----------

구분	심사사항	심사기준
재정 및 기술적 능력과 사업운용 능력의 적정성	위치정보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정적·기술적 능력과 사업운용 능력을 심사하기 위한 사항	- 소요자금 규모 및 이에 대한 조달 방법의 적정성 - 양수인(분할)의 재무구조의 건실성 - 관리적·기술적 보호조치의 적정성 - 사업운용계획의 적정성
위치정보사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	위치정보사업의 경쟁 제한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사항	- 당해 양수(분할)로 인한 양수(분할)인의 시장점 유율 변화 추이 - 시장진입의 용이성 여부 -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계약전환 비용의 과다 여부 - 사업자간 공동행위의 용이성 여부
개인위치정보주체 또는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자 보호 및 공익에 미치는 영향	개인위치정보주체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이익저해 여부 및 공공의 이익 증진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사항	- 당해 양수(분할)로 인한 법 제24조의 동의철회, 중지요구, 열람 등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침해 여부 - 요금, 서비스품질의 변경 등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 이익의 저해 여부 - 설비의 공동활용 등에 따른 생산성 증대, 국제 경쟁력 강화 등 위치정보산업의 효율성 증대 여부

○ 양수 및 분할 관련 요약문

다음과 같은 양수 및 분할 관련 변동사항을 간략하게 기술

- 양수(분할) 개요, 목적, 일정, 양도 양수 주체
- 양수(분할) 이전과 이후 조직변화 및 재무변화 비교
- 양수(분할) 이전과 이후 변경된 사업 내용 비교
- 양수(분할) 이전과 이후 변경된 시장점유율 비교
- 양수(분할) 이전과 이후 변경된 투자 및 재무계획
- 양수(분할)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조치 계획 및 주요 변동사항
- 양수(분할)에 따른 서비스 품질변동에 관한 사항